
自由의 概念에 대한 研究

- 그 實現條件과 關聯하여 -

鄭 鎮 午

目 次

1. 序 論
2. 自由의 概念
 - i) 消極的 概念
 - ii) 積極的 概念
 - iii) 問題的 概念과 斯言的 概念
3. 自由의 實現條件
4. 結 論

1 . 序 論

自由의 問題는 政治學의 核心問題의 하나로서 特히 自由의 概念規定의 差異에 依해서 世界가 自由와 獨裁의 兩大陣營으로 나누어진 結果를 빚은데 따라 그 概念定立은 무엇보다도 時急한 일 이라고 할 것이다.

*이 논문은 1979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그리고 自由의 概念定立에 따라 그러한 自由의 實現條件을 살펴봄으로써 急變하는 産業化社會에서의 人間의 自由의 實現을 爲한 方案을 模索해 보고자 한다.

2. 自由의 概念

自由의 概念을 具體的으로 論하기 前에 政治思想史에 있어서 自由가 어떻게 展開되어 왔는가를 살펴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自由의 概念規定을 보다 明白히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Charles Vereker 에 따르면 自由의 概念은 Platon 以來로 삶의 妨害와 不完全으로부터의 解放(release)을 그 核心內容으로 한다는 것이다.

“過去의 政治的 成就보다도 더 富裕한 道德的 生活의 享有, 보다 더 正義롭고 덜 不平等하고 더 合理的이고 啓蒙的인 生活의 享有를 爲한 經驗된 삶의 妨害와 不完全으로부터의 解放으로서의 이러한 自由의 概念은 最少限 Platon 만큼이나 오래된 하나의 꿈 또는 理想的인 vision의 한 局面이다. 거기에는 그 속에서 모든 政治的인 思惟가 社會條件을 物理的으로나 道德的으로 改善하는 것에 關聯되어온 意味가 存在한다”¹⁾

여기에는 道德的 生活을 爲해서 人間이 不完全과 妨害에서 解放된다는 것이 主內容을 이루고 있는데 道德的 生活의 意味가 以後 自由의 歷史에서 問題가 되며 또한 自由는 人間의 理想的인 vision의 全局面이 아니라 一局面임을 分明히 하고 있고 社會條件의 改善問題와 自由가 關聯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中世의 基督教에서는 政治制度는 原罪의 結果라고 했으며 神의 奉仕에 있어서 發見되는 完全한 自由의 새로운 삶의 條件은 나중의 救濟를 希望하면서 이 世上에서 原罪의 束縛(thralldom)에 대한 服從이었다. 즉 여기에서는 束縛이 自由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暗示를 革命的 舍畜을 갖는 深刻한 政治的 理論으로 轉換하는 데는 萬人에게 自由의 提供이 열려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만 하는 것이 必須的이었다.

近代市民國家를 招來한 이러한 萬人平等思想은 人性에 樂觀的인 見解를 가지는 John Locke 와 Adam Smith에 依해서 社會的 調和는 個人의 私的 領域을 擴大함으로써 可能하다는 見解를 表示했고 그와 反對되는 Thomas Hobbes는 그 領域을 縮少함으로써 可能하다는 見解를 取했으나 “그러나 이 두가지 理論은 모두가 人間存続의 어떠한 部分이 社會制度의 分野에서 獨立되

1) Charles Vereker,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theory, Hutchinson University Library, London, 1957. P. 185.

지 않는다면 안된다는데 一致하고 있는 것이다. 個人的 領分을 侵犯함은 이것이 아무리 적다 할 지라도 專制인 것이다 2)

따라서 個人的 私生活의 領域과 公的權威의 領域사이에는 境界線이 그어져야만 한다는 問題가 提起되는데 人間이 共同生活을 하고 있는만큼 他人의 生活을 決코 妨害하지 않을만큼 完全히 私的인 領域은 存在할 수가 없다는 것은 自明하다. 人間은 絶對的으로 自由일 수 없으며 他人의 自由를 保存하기 爲하여 自己의 自由의 어떤 것을 讓步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最少限의 讓步는 “人間으로서 그의 人性의 基本을 犯하지 않고는 讓步할 수 없는 것이다 …… 그 이름을 保存할 만한 唯一의 自由는 우리 自身의 方法에서 우리 自身의 善을 追求하는 것이다 ” 3)

바로 이 基本이 무엇인가 하는 問題가 아직도 解決되지 않고 있는 問題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무엇이 人間의 本性인가, 무엇이 社会的 產物인가 하는 것은 時代와 思想家에 따라서 極히 많은 差異를 보이는 判斷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形式的으로만 觀察해보아도 모든 自由의 概念뒤에는 하나의 人間學 即 人間의 本性에 關한 認識論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arold Laski의 最善我 그리고 E.Heimann의 創造力等은 말할 바도 없이 同一한 것이 아니다. 어디에서 人間의 自己實現이 內容的으로 可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時代와 사람에 따라서 多樣하고 서로 다른 方法에서 規定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境界線을 긋는 問題에 있어서 J.S.Mill과 大概의 自由主義者들은 一貫하여 他人의 目的을 攪亂하지 않는 限, 諸目的의 價值를 評價하지 않고 될 수 있는대로 많은 個人이 그들의 目的을 더 많이 實現할 수 있는 條件을 要求하고 있다. 그들은 純全히 모두가 다 같이 窮極의이며 그 自体로서 批難할 수 없는 目的이라고 看做하여야 하는 人間의 諸目的의 사이에 衝突이 없도록 制止한다는 見地에서 各個人 또는 集團間에 境界線을 그으려고 한다.

自由는 人間의 理想的인 꿈의 한 面이기에 모든 人間으로서 앞서는 要求는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人間에게 있어서 同一한 自由로서 重要性을 지니는 것이며 또 어떠한 自由는 때에 따라 다른 自由를 保障하기 爲하여 縮少되는 수도 있음에 비추어 自由는 神聖不可侵의 價值를 가지는 것도 아니나 個人的 私的인 自由의 保障問題는 政治思想史에 있어서 如前히 가장 重要한 問題의 하나로 남는다.

i) 消極的 概念

Isaiah Berlin은 自由에 關한 政治的 意味로서 두 가지를 分類하는데 곧 消極的 意味와 積

2) Isaiah Berlin, "Two Concepts of Freedom", 閔丙台訳, 世界誌, 1959. 9月号, P.23.

3) Ibid., P. 23.

極의 意味이다.

消極的 意味라는 것은 “主體者——個人 또는 人間集團—가 他人의 干涉이 없이 할 수 있으며 또는 하여야 하며 또는 그가 願하는 바를 하며 또는 하도록 되어있는 範圍가 무엇인가?”⁴⁾의 問題에 關한 對答에서 暗示된다고 한다. 이는 個人의 私的 領域에서의 活動을 意味하는 것으로 自由는 이러한 干涉을 防止한다는 消極的 目標에서 擁護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個人主義的 思考方式은 元來는 倫理的 信條라고 볼 수 있는데 外部世界가 例外的으로 暴惡하여 人間이 幸福, 正義 또는 어떠한 意味에 있어서의 自由든지간에 追求할 수 없는 狀況에서는 自己自身の 内部로 隱遁하려는 氣性이 不可避하게 될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卽 여기에서는 人間의 諸行為의 結果는 自身이 調節하는 以外의 것인만큼 自身の 合理的 動機만이 問題 될 뿐이라는 隱遁主義者의 論理가 成立하기 때문인데 여기에 政治的인 意味가 있음은 明白하며 이것은 적어도 消極的 自由概念에 있어서와 같이 自由主義的 個人主義의 傳統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이다.

이러한 消極的 自由의 概念을 具體化하려는 政治思想家 가운데 J.S.Mill을 빼놓을 수는 없다.

그는 “個人의 行動가운데서 社會에 服從하여야 할 唯一한 部分은 他人에게 關係되는 部分뿐이다. 그 自身에게만 關係되는 部分에서는 個人의 獨立은 絶對的이다. 그 自身の 身體와 精神에 對하여 個人은 至上의 君主이다.”⁵⁾

이러한 個人主義의 規範이 社會와 個人의 關係에서 絶對的 原則이 되어야 한다고 Mill은 斷定했으나 自由란 向上될 수 있는 사람에게만 適用되므로 向上할 能力이 全無한 사람에게는 無意味하다고 하여 自由보다도 幸福을 目的으로 하는 有用이, 特히 進歩할 수 있는 能力을 保持한 人間의 幸福을 爲한 有用이 至上의 規範이 됨으로써 自由와 進歩를 同義語化하고 있다. 이것은 分明히 經驗的 問題이지 規範的 命題는 아니다. 그리고 Mill이 眞理라는 角度에서 自由의 拘束은 左右間에 社會的 損失을 招來한다고 主張하는 것은 自由가 眞理라는 다른 規範에 依하여 正當化됨으로써 自由와 眞理를 또한 混同하고 있다는 것은 指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自由가 目的으로 하는 獨自性이나 創造性은 天才나 善良의 것이라고 함으로써 그의 消極的 自由가 大衆에게 適用될 때는 오히려 經驗的 次元에서는 그 妥當性을 잃을 수도 있는 過誤를 犯하고 있다. 特히 人間이 他人의 願하는 바를 알 수 있다고 假定하는 點에서는, 卽 他人이 무엇을 願하여야만 理性的 人間인가 하는 問題에 있어서는 理性에 關한 規範的 定義를 前提로 하지 않으면

4) Ibid., p. 21.

5) John Stuart Mill, On Liberty, Henry Rogency Co, Chicago, 1955. p. 13.

안된다. 6)

Berlin은 이러한 消極的 自由의 概念에 對해서 그것이 一般大衆을 爲하여 強調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權利自体를 神聖視하는 人間關係의 領域에 있어서의 私的이라는 事實이 意味하는 바는 모든 宗教的 根源으로 보아 發展한 國家에 있어서는 文芸復興이나 宗教改革에 比하여 오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指摘하고 그러나 이것의 凋落은 完全한 道德을 展望하는 文明의 死滅을 表示할 것이라고 그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다. 7)

한편 消極的 意味의 自由는 原則적으로 그 根源이 아니라 統制의 領域에 關聯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로소 여기에서 統制의 領域에 關聯되는 積極的 意味의 自由가 發生하게 되는 契機를 마련해 준다. 다시 말하면 “누가 나를 統治하느냐?”의 質問에 關한 對答은 “어느 程度로 政府가 나에게 干涉하느냐?”의 消極的 自由의 概念과는 論理的으로 反 問題인 것이기 때문이다.

消極的 意味의 自由는 論理的으로 民主主義 또는 自治와 關聯되는 것이나 個人의 自由와 民主主義原則사이에 必然的인 關聯性이 있는 것이 아니며 消極的 自由는 獨裁 또는 自治의 欠如와 對立되는 것이 아니라는 點은 留意해들 點이라 할 것이다.

ii) 積極的 概念

Berlin은 積極的 意味의 自由는 “어떠한 者가 具體的으로 하나의 일을 하며 또는 하도록 規定할 수 있는 統制 또는 干涉의 根源이 무엇이며 또는 누가 이것을 하느냐?”⁸⁾의 問題에 關한 對答에서 發生한다는 것이다.

人間이 自己 스스로에게 統治되려 하고 어쨌든 自身의 生活이 統制되는 過程에 參與하겠다는 自治 또는 民主主義에 對한 慾望이 바로 積極的 概念이며 이것은 -消極的 見解의 信奉이 때로 慘憺한 暴君에 對하여 그럴듯한 口實을 提供하는 以外에 아무 것도 아닌- 自由에서의 解放이 아니라 이러한 自由로의 指向을 말하는 것이다.

積極的 意味의 自由는 個人이 自己自身の 主人公이 되려는 慾望에서 發生하는 것이다. 個人은 무엇보다도 自身의 選擇에 關하여 思考하며 意慾하며 行動하며 責任을 지는 데 對하여 스스로 意識을 가지려고 하며 自己의 理念과 目的에서 미루어 諸事項을 說明할 수 있기를 願하며 그는 이것이 真理라고 確信하는 程度에 따라 奴隸化됨을 느끼게 되는 때 發生한다.

이것은 他人과의 關係에서 成立하는 消極的 自由와 自己가 自身의 主人公이 되는 데서 成立하는

6) 李洪九, 積極的 自由와 消極的 自由 - J. S. Mill의 「自由論」을 중심으로 -, 韓國政治學會報 第3 輯, 韓國政治學會, 1969. 12月号, pp. 219-221.

7) Berlin, op. cit., p. 25.

8) Ibid., 21.

積極的 自由는 外見上 같은 事項을 말하는데 있어 消極的 方法과 積極的 方法에 지나지 않는 두 가지 概念으로 看做될 수 있을 것이나 이 두 見解는 相馳되는 方向으로 發展하여 結局 直接 衝突하는 局面에 이르게 된 것이다.

積極的 自由를 主張한 J. J. Rousseau에 있어서 自由는 “自我-그의 意志・理性과 感情이 均 衡된 完全性에서 모두 協同하고 그가 다른 사람들과 同僚로서 幸福하게 살 수 있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共通關心에 있어서 同一한 調和的인 自我統制를 反映하기 때문이다)-의 調和를 意味하는 것이었다”⁹⁾ 그리하여 政治體 (Political body)의 모든 構成員이 서로 사는데에 共通 利益 即 歷史的 與件의 奴隸로부터 挑避할 뿐만 아니라 未來의 善한 生活의 追求를 確保할 수 있는 共同의 積極的 利益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法을 만드는데 共同責任을 同等하게 가져야 한다고 主張했으며 그들의 積極的 利益은 自由라고 指摘했다.

그의 一般意思의 理論에 있어서 그 속에서 萬人이 主權者여야 하며 同時に 臣民이어야 한다는 政治的 思惟는 바로 直接民主主義에 對한 要求로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ousseau에 있어서 積極的 自由의 概念은 그 以後에 展開되는 I. Kant G.W.F. Hegel 그리고 K. Marx와는 完全히 同一한 것이 아니라는 點은 留意해야 될 必要가 있다.

그는 財産關係와 社會의 不調和에 對해서 言及하기는 했으나¹⁰⁾ 그가 後期에 個人들에 依한 財産制度의 特權에 依한 어떠한 誤用도 政治的 權威 即 一般意思가 統制할 수 있다고 하면서 法律下의 財産制度를 受諾한 데는 어떠한 矛盾도 없다. 정말 어떠한 사람도 認定된 社會秩序의 部分으로서 除外하고는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것을 所有했다고 正當하게 말해질 수 없다.¹¹⁾

이것은 Marx와 다른 點이며 게다가 그는 一般意思가 發見될 수 있는 곳에 對해서 決코 滿足 할만한 對答을 하지 않았으나 一般意思가 表現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自体를 代表에게 빌려주는 것은 아니라고 確信했다.¹²⁾

이것은 以後의 全體主義的 獨裁主義의 一般의 理論과는 큰 差異點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Rousseau에 있어 人間의 主要한 特性은 願望의 滿足속에서 그들의 目的을 追求하는 것이며 비록 그것이 善한 目的을 意味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바를 願하며 願하는 바를 하는 者는 眞實로 自由라고 함으로써 人間의 自己實現을 積極的으로 主張한 事實은 留意해 둘 必要가 있다.¹³⁾

그러나 問題는 Rousseau의 影響을 받은 그 以後의 思想家들에 依해서 이 積極的 概念은 變質

9) Vereker, op. cit., p. 194.

10) The Social Contract and Discourses, edited G. D. H. Cole (Everyman), p. 192. Discourse on Inequality.

11) Vereker, op. cit., p. 197.

12) Ibid., p. 203.

13) Berlin, op. cit., 10月号, p. 46.

되어 自由의 主要한 敵對者로서 나타나게 된 데 있다.

Kant 와 Hegel 은 道德的 model로서의 純潔하고 非文明화된 自然을 Rousseau가 高揚한 것을 妥當하지 않은 것으로 拒否했다. Hegel 은 單純한 自然속에서 精神的인 것이 가라 앉으며 모든 人間의 보다 高次的인 能力은 이 國家가 人間을 깨우지 않은다면 永遠히 잠잘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차라리 合理的인 制度의 完璧性에 그리고 Kant 의 見解에 따르면 開發과 文明의 現水準을 超越해서 成就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道德社會에 存在하는 自由에 期待를 걸었다. 또한 그들에게서는 強力하고 決定的인 統治에 對한 必要에 關心을 갖는 보다 傳統的인 見解를 發見한다. 14)

또한 Hegel은 Kant 와 Rousseau의 自由意志와 같은 그들 理論의 基礎는 其實 個人的 번덕스러운 意志이며 真正한 精神과 一致하는 絶對的이고 合理的인 意志가 아니라고 했다. 그 理由는 自然科學의 影響을 받은 18c 社會科學者들의 自然科學的 社會科學的 樹立試圖에 따른 結果 때문이었다.

當時의 社會科學者들에 依하면 人間이 理性的인 必然性으로서 理解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적어도 合理的인 限, 人間은 이것과 달리하기를 願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當爲性에 따라 事物을 理解함은 여기에 따라 意慾케 함을 意味한다. 그것들 以外의 다른 必然法則을 願함은 非合理的 慾望 - X라야 할 때 X이어서는 안된다는 慾望-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必然的인 것이 아닌 諸法則을 믿음은 精神錯亂이라고 한다. 이것이 即 形而上學的인 合理主義의 真髓이다.

여기에 內包된 自由觀은 消極的 概念이 아니라 自己指向 또는 克己의 自由觀이다. 이것은 理性에 依한 解放에 關한 積極的 理論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自由는 非合理的인 또는 어리석은 또는 나쁜 것을 行할 自由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經驗的 自我를 強要하여 옳은 패턴에 서도록 함은 暴政이 아니라 解放이 되는 것이다.” 15)

Hegel 과 Marx도 이 理論을 社會化한 것으로 그들은 이러한 旧機械主義的 形式에 代置하여 그들 自身の 決定的인 社會生活의 方式을 主張하였으나 그들의 反對者에 못지 않게 世界가 解放될 것을 確信했다. 그들은 人間을 人間답게 하는 變換과 發展에 爲하여 演出되는 役割을 強調하는데 있어 各各 다를 따름이다.

이러한 Hegel 學派의 目的論的 決定論에서 離脫하여 더욱 主意的인 哲學이 發生할 수도 있다.

Kant는 温情主義는 想像할 수 있는 最大의 專制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人間을 自由가 아닌 것

14) Vereker, op. cit., p. 203.

15) Berlin, op. cit., 11月号, p. 134.

처럼 待遇하기 때문이 아니라 人間에 對해서 慈悲로운 改革家로서 그들을 無視하고 自身이 自由로 適用한 目的에 따라 그들을 屬型化할 수 있는 人間으로서 待遇하는 까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Kant가 主張한 바와 같이 모든 價值가 人間の 創造物이며 그들이 創造하는 限에 있어 비로소 價值라고 부를 수 있다면 個人을 凌駕하는 價值란 存在하지 않는 것이다.¹⁶⁾

이와같이 Kant는 個人主義者로서 Rousseau와 마찬가지로 自由意志를 自治와 普遍性으로서 特徵지었을 뿐만 아니라 合理的인 自己志向의 資能이 모든 人間에게 賦與되었으며 道德은 普遍的인 人間の 能力을 옮겨 利用하는 것인만큼 道德의 事項에는 專門家가 있을 수 없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Kant도 政治問題를 다루게 되자 나에게 要求될 때 내가 이것을 理性的인 人間으로서 讚成해야 할 것이라면 法律이라 할지라도 나의 理性的인 自由의 어떠한 部分도 이것을 나에게서 剝奪할 수 없음을 認定했다. 여기에서 비로소 專門家の 支配를 爲한 門戶가 開放되었던 것이다.¹⁷⁾ 이러한 論理는 結局 專門家は 自身이 公共福利에 責任을 지나 모든 사람이 全般的으로 合理的인 때까지는 기다릴 수는 없다는데에 이른다. Kant는 人間으로서 主体者의 自由의 要素는 그가 또 그만이 服從할 命命을 내리는데 있다고 主張하였을지 모르나 그것은 完成을 勸告한 것이 된다.

積極的인 自由概念을 主張하는 者들에 있어 共通되는 點은 모두가 完全히 合理的인 動物의 社會에 있어서는 他人에 對한 支配慾이 除去되며 또는 效果를 나타내지 못하게 될 것임을 前提로 한다.

그리고 우리의 眞實한 本性의 合理的인 目的은 感情的이며 經驗的인 自我가 이 過程에 反抗하여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一致하여야 하며 또는 一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人間에 賦課되는 理性과 義務의 權威는 合理的인 目的만이 自由人의 眞本性의 참된 目的일 수 있다는 假定에서 個人의 自由와 一致한다. 이에 對해서 Berli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이 文脈에서 「理性」이 무엇을 意味하는지 全然 理解하지 못함을 自認할 수 밖에 없으며 여기에서는 이 哲學的인 心理學的인 先驗的인 假定이 經驗主義와 兩立할 수 없으며 換言하여 認識論에서 成立된 어떠한 理論이라도 人間이 무엇이며 무엇을 願하는지의 經驗에서 나온 것임을 指摘해 두기로 한다.”¹⁸⁾

Berlin은 人間이 서로 對立된다는 事實에 비추어 自己支配(self-mastery)로서의 自由에 對한 積極的인 概念은 더욱 用易하게 先驗的으로 優越한 支配者와 服從케 해야 할 感情의 集團이라는 두가지 人格으로 分裂케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自由의 概念이 自我, 個人 또는 人間을

16) Ibid., 10月号, p. 45.

17) Ibid., 11月号, p. 138.

18) Ibid., p. 139.

構成하는 것이 自由라는 見解에서 直接 抽論되는 것임을 証示하는 것이라고 指摘한 다음 人間에 關한 定義는 얼마든지 造作될 수 있으며 自由는 造作者가 願하는데 따라 어떠한 意味라도 附帶시킬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19) 序頭에서 Vereker가 自由는 人間의 理想的인 vision의 一局面임을 指摘한 것과 同軌를 걷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自由의 積極的 概念이 全体主義的 獨裁主義나 共產主義下에서 消極的 自由를 犧牲시키고 人間을 奴隸化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自由世界에 있어서의 이 두가지 概念의 關係도 살펴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Berlin에 따른 積極的 概念이 人間은 倫理的 生活을 營爲할 때만 그의 本然的 目的을 實現시키는 人間다운 生活을 하는 것이라고 肯定한다면 積極的 自由의 概念이 妥當性을 지녔다는 것을 否認하기 어렵고 自由를 人間의 本然的 目的의 實現이라고 定義하면 그 目的의 性格을 積極的 規範으로서 規定할 수 밖에 없다. 20)

Ralf Dahrendorf도 自由를 무엇보다도 하나의 <……에서부터의 自由> 다시 말해서 單純하게 否定的인 價值로서 規定하는 것으로는 充分치 않고 오히려 自由를 무엇보다도 ……에 對한 自由로서 <積極的인> 價值로 理解해야 한다는 積極的인 觀點은 적어도 形式的인 合意라는 無視할 수 없는 尺度에 依해서 그 特性이 나타나고 있다고 指摘하고 거의 모든 思想家들에서 볼 수 있는 基本動機는 社會에 있어서의 人間의 自己實現이며 따라서 人間의 自己形成에 對한 自由를 意味하는 自由라고 積極的 概念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다. 21)

그러나 Berlin의 積極的 自由는 民主主義의 原則이고 消極的 自由는 自由主義의 核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른바 自由民主主義時代에 概念上으로 区分될 수 있는 積極的 自由와 消極的 自由가 經驗的 次元에서 混合되어지는 것은 不可避한 事實이라고 하겠다.

다른 한편 心理的 次元에서 人間의 本然的 目的을 追求할 때 積極的 自由란 政治的 自由보다도 心理的 束縛으로 말미암은 非人間化로부터의 解放을 意味한다. Erich Fromm에 依하면 積極的 自由란 物質에 依한 人間의 制壓을 終末짓기 爲하여 各個人이 그의 本然的 目的을 實現시킬 수 있는 社會的 經濟的 狀況에 놓여지는 것을 뜻한다. 22) 積極的 自由는 곧 人間의 非人間化를 가져오는 疎外의 克服이다. 人間의 心理的 疎外를 制度化하는 社會的 經濟的 環境속에서 消極的 自由를 부르짖는 것은 窮極的 次元에서는 無意味한 行動에 지나지 않으며 奴隸的 狀態의 維持를 裝飾할 뿐이라는 것이다.

19) Ibid., 10月号, P. 43.

20) 李洪九, op. cit., P. 217.

21) R. Dahrendorf, Reflexionen über Freiheit und Gleichheit, 黃性模訳, 第三의 이메울로기, 太極出版社, 1974, pp. 230-231.

22) E. Fromm, Escape from Freedom, New York, Reinhart and Winston, 1941, pp. 265-271.

그러나 Dahrendorf는 人間의 自己實現에 對한 見解는 思想家에 따라 또 時代的으로 다르기 때문에 自由의 여러 概念의 人間學的 背景과 平等과의 關係를 考察하게 된다면 人間의 自己實現을 恣意的인 強制의 欠如의 裏面으로써 理解할 수 있다는 立場에서 自由의 積極的 認識은 다만 自由를 強制의 欠如로써 消極的으로 把握하는 것을 補強하는 것이므로 이 兩 概念을 對立的으로 보지 말 것을 主張하고 있다. 強制의 欠如란 人間이 固有하게 自己自身の 內的 本性에 따라서 行爲하고 그러한 限에 있어서 自己를 實現하는 것과 같은 것을 意味한다. 社會的인 狀況에 따라서 일어나는 強制나 制限에서부터의 自由와 人間의 自己實現에 對한 自由는 한 思想의 兩面이므로 이 두 概念을 對立시키는 일이 誤解에 立脚하고 있다. 그러한 誤解는 自由가 單純히 人間의 自己實現의 可能性으로 理解될 때에만 發生하는 것이라고 한다.²³⁾

iii) 問題的 概念과 斷言的 概念

Dahrendorf는 恣意的 強制의 欠如가 人間으로 하여금 自己의 本性을 發展시키는 立場에 놓게 한다는 것만으로는 人間이 그에게 주어진 機會를 利用할 줄 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卽 自由는 人間의 本性에서 나온 것이 아닌 모든 抑壓을 人間에서부터 없애는 社會속에서 可能하다는 概念으로서의 問題的인 自由概念과 自由란 언제 어디서나 自己實現의 機會가 知覺되고 人間의 事實的인 行爲에 있어서 그것이 形態를 가지게 될 때에만 可能한 것으로서의 斷言的인 自由概念을 區別하고 있다.²⁴⁾

自由의 問題的 概念에서는 自由와 餘暇(自由時間)는 同一한 것이다. 自由時間은 自然히 自由를 만들어낸다. 거기에는 強制가 除去되어 있고 自己實現의 機會도 있다.

이에 反해서 斷言的인 自由概念에 있어서는 自由 그 自体는 自由가 自己實現의 意味에서의 活動으로서 知覺될 때 發生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人間에 關해서도 그의 存在의 單一瞬間이라도 그가 自由롭다고 말할 수 없다는 演繹이 나온다. 同時에 어떠한 社會에 對해서도 그 社會가 自由롭다고 말할 수 없는 結論이 나온다. 하나의 自由로운 社會는 오로지 問題的인 意味에서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斷言的으로는 그 社會가 必要한 境遇에는 自由의 可能性을 만들어낼 수는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두 個의 自由概念의 區別위에서 制度的 變化의 手段으로서의 政治의 한 理論과 制度에 關한 社會秩序에서 政治的으로 關係되는 領域을 넘어가는 理論과의 사이에서 諾起되는 實로 重大한 結果를 隨伴하는 差異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²⁵⁾ 이미 相當한 影響力을 가지는

23) Dahrendorf, op. cit., p. 232.

24) Ibid., p. 232.

25) Ibid., p. 234.

價值選擇이 包含된 區別을 하고 있음은 留意할 必要가 있다.

이때 萬一에 問題的 自由概念을 根拠로 한다면 政治의 唯一한 課題로서 自由를 侵害하는 여러 強制의 除去問題가 提起된다. 이와 같은 觀點 밑에서는 自由의 領域을 擴大한다는 것은 政治의 課題가 되고 그 以上の 問題가 된다면 個人은 그의 運命에 몸을 맡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反面에 斷言的 自由概念을 根拠로 한다면 政治行動의 責任 또한 自由實現의 機會를 知覺하는데 充分하다.

그리고 分明히 어느 意味에서는 國家市民平等은 모든 사람의 自由를 爲해서는 꼭 必要하기는 하나 아직도 充分하지 않은 條件이다. 이 條件이 없는 곳에서는 모든 사람의 自由는 어떠한 意味에서든 不可能하다. 그 條件이 주어진다 해도 그것은 다만 人間의 自己實現의 可能性에 對한 問題內包的인 自由만을 만들어낼 뿐이다.

斷言的인 意味에서의 自由 卽 自由스러운 自己實現의 現實은 平等以外에도 어느 追加的인 條件을 가진 國家市民身分을 必要로 한다.

以上の 自由世界에 있어서의 自由의 概念은 한마디로 經驗的으로 充分히 自由스럽고 規範的으로 主體的으로 自覺的인 人間의 自己實現에 歸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自由의 實現 條件에 對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 自由의 實現條件

Berlin은 經驗主義的인 그의 當然한 立場에서 消極的 自由의 實現條件에 對해서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그에 依하면 모든 選擇이 다 같이 自由가 아니며 또는 完全히 自由가 아니다. 그러므로 單純히 抉一의 機會가 있다 하여도 用語의 普通 意味로 보아 個人이 充分히 自由로운 活動 (아무리 自發的이라 할지라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個人의 自由의 程度는 다음과 같은 諸 條件에 依存한다. a) 어느 程度로 그에게 可能性이 公開되었는가? b) 이러한 可能性을 하나씩 實際化하는 것이 얼마나 用易하고 困難한 것인가? c) 그의 性格과 環境을 가지고 이러한 可能性이 他人과 서로 比較되어 그의 生活設計에 있어 얼마나 重要的인 것인가? d) 이것이 具體的인 人間行爲에 依하여 어느 程度로 閉鎖되고 開放되어 있는가? e) 單純히 行爲者뿐만 아니라 그가 生活하는 社會의 一般感情에 對하여 어떠한 價值가 있어서 各種 可能性을 追求하는 것일까? 모든 이러한 重要性이 複合되어야 하며 必然的으로 正確하며 또는 明確하지 않은 結論이 이 過程에 抽出된다. 여기에는 比較할 수 없는 各各 程度가 다른 自由가 있으며 아무리 計劃한대도 이것은 單一規模의 重要性에서 抽出될 수가 없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그 뿐 아니라 社會에 있어

우리는 X의 排列이 여러가지 中에서 B, C 및 D에 比하여 A氏에게 더욱 自由를 增加케 할 것인가와 같은 論理的으로 莫然한 問題에 逢着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比較할 方法과 結論의 眞實性을 明示하기가 困難하며 또는 이것이 不可能할지라도 生活의 全般的인 類型을 直接 全體로서 比較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概念的 未確性和 여기에 內包되는 規準의 多樣性은 主題自体에서 나오는 屬性이며 우리의 不完全한 計算方法 또는 正確한 思想이 있을 수 없다는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²⁶⁾

한편 Dahrendorf는 自由의 實現條件을 自由와 平等과의 關係에서 即 國家市民身分의 平等, 社會身分의 平等과 社會性格의 平等과의 關係에서 찾고 있다.

自由와 平等의 關係에 있어서 Berlin이 指摘한대로 모든 人間의 平等을 믿는 것은 人間이 扞하는 바에 따라 生活할 自由를 믿는 것과는 判異하다고²⁷⁾ 할 수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의 實存의 地位가 先天的으로 平等할 때는 언제나 그 理由때문에 모든 사람은 自由의 機會를 갖는다는 것도 否認할 수 없다.

反面에 人間實存의 所在의 平等은 自由의 機會와는 緊張關係에 있고 平等이 人間에게 內在的인 自由에 對한 懷疑를 갖는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人間은 平等할 때만 그들 自身이 아닌 하나의 共同法則을 따르므로 必然的 平等과 可能的 自由사이의 對立은 創造的이며 善良한 生存의 限界이며 衝動이기도 하다. 人間生存의 不變值로서의 人間本性的 平等은 社會的 諸力の 實質的 發展과는 關聯이 없는 것으로서 自由와 平等에 關한 人間學的 對立은 社會發展에 따르는 하나의 附隨音이다.

그리고 人間の 權利를 調整했던 歷史的 過程은 國家市民의 社會的 役割의 發生과 定義의 過程이기도 하다. 國家市民의 役割은 그 自身の 發展과 同時에 他人의 發展을 可能케 하는 어느 權利와 義務를 他人들에게 賦與한다. 發展된 社會에서도 國家市民의 平等은 今일에 있어서도 過程인 것이지 完全한 現實은 아니다. 이와같은 過程은 法앞에서의 모든 市民의 平等과 더불어 始作되었다.

國家市民的 身分의 平等은 問題的인 自由만을 發生시키며 또 그러할 수 있다는 點이다. 國家市民的 平等權은 不平等이 可能할 수 있는 條件이다. 왜냐하면 모든 人間은 그들의 實存의 樣式에서 不平等할 수도 있는 것이다. 機會와 限界의 平等없이는 生活의 樣式과 形態의 多樣性도 不可能하다. 萬一에 國家市民의 權利와 義務가 社會的 實存의 基礎를 넘어서 擴大하려고 하든지 또는 人間の 自己發展의 樣式을 統制하려고 試圖하게 될 때에는 그 權利와 義務는 自由의 必要한 條件에서부터 그것의 破壞者로 登場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斷言的 自由는 國家市民的 身分의 平等에 依해서 오로지 機會로서만 남게될 수 있는 것이다. 斷言的 自由는 同等한 市民의

26) Berlin, op. cit., 9월호, p.105.

27) Ibid., p.28.

社會에서는 國家市民的 身分에 依해서 解決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解決되어 있지 못한 個人의 課題로 남고 있다.

그러나 國家市民的 平等은 그 本質上 問題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런대로 斷言的 自由를 發生케 한다는 데에 依存할 수 있다. 萬一에 이 말이 옳다면 그것은 平等權의 內容은 同等權이 다만 社會過程에서 可能하기는 하나 實際的으로는 個人의 參與를 規定하지 않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意味하기도 한다. 選舉權은 自由가 可能할 수 있는 條件이기는 해도 選舉義務는 적어도 潛在的으로는 國家市民的 身分의 한 部分으로서는 뜻있는 일이라고는 생각될 수 없는 自由의 制限이기 때문이다.²⁸⁾

특히 國家市民的 身分의 平等과 社會身分의 平等사이의 關係는 現實的으로는 어렵다. 老人保護와 患者看護를 市民權으로서 볼 수 있는가? 또는 그것을 個人의 自由領域에 對한 侵犯으로 보아야 하는가? 自由와 社會身分의 平等사이의 關係는 自由와 國家市民的 身分의 平等과의 關係보다는 完全히 다른 性의 것이기 때문에 甚히 重要한 意味를 가진 하나의 過程이다.²⁹⁾

社會身分의 平等은 國家市民的 平等과는 달리 社會參與樣式의 水準化를 나타내며 그것은 社會的 實存의 諸形態이며 그 基底는 아니다. 모든 사람이 同等한 立場에 있는 限 社會身分의 한 最少水準은 自由가 可能할 수 있는 條件이 된다는 것은 當然하다. 따라서 國家市民的 基本權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自然스러운 個人의 條件에 屬하는 것이며 決코 여러 條件에 屬하는 일은 아니다. 따라서 自由의 機會의 社會構造를 除去한다는 意味에서는 하나의 社會身分의 最少限은 國家市民的 身分의 平等의 不可欠한 構成部分이다.

어떻게 이 最少限을 規定지을 수 있는가? 이보다도 더 重要한 다른 問題는 卽 누구도 그 以上 下落할 수 없는 同等한 身分을 可能하다면 높게 設定해야 할 것인가, 되도록이면 낮게 設定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여기에서 留意해야 할 점은 身分階位 構造의 밑바닥과 上層部分 사이의 距離가 너무 좁게 되지 않기 爲해서 配慮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편 國家市民的 平等의 意味는 어떠한 사람도 그가 他人에게서부터 그들의 國家市民的 資格을 拒否할 程度로 過多利益을 얻는 立場에 서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事實속에서 成立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自由를 爲해서 하나의 成就 可能한 社會身分의 上限線은 確定되어야 한다고 할 때에도 저기에는 몇몇 사람들의 自由의 制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上向的인 社會身分階位構造에 對한 그 限界線은 지나치게 낮게 設定되어야 하기 보다는 오히려 過하게 높게 設定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로써 人間의 自己實現의 機會가 實地 보다는

28) Dahrendorf, op. cit., pp. 244 ~ 245.

29) Ibid., p. 245.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지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社会身分의 尺度를 지나치게 損傷하는 것은 權力和 質的 差違에로 轉變시키는 過度한 不平等과 마찬가지로 危險한 일이다.

그리고 한 社会의 階層構造가 單調化되면 될수록 그리고 水準化되면 될수록 그 構造는 市民의 現實的인 自由의 機會를 더 強하게 制限하는 것이다. 同時에 社会的 階層化가 多元的으로 되고 分化되어 있으면 그럴수록 그것은 各個人의 要求와 才質의 多樣性에 알맞게 되어있다. 國家市民 身分을 根柢로 한 萬人의 同等한 地位가 前提로 되고 있는 곳에서는 社会身分의 不平等은 自由機會를 爲한 한 催告狀이 되는 것이다.

한편 社会性格의 平等은 唯一하게 J.S.Mill만이 主張한 것이다. Mill은 多數의 專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社会的 專制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社会는 그의 特有的 支配를 行使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그 支配가 올바른 命令代身에 잘못된 命令을 한다면 또는 그 支配가 当面하고 있는 여러 일에 대해서 命令해야 한다면 그때에는 그 支配는 政治的 彈圧의 여러 形態보다도 더 可恐할 하나의 社会的 專制를 實現하게 된다. 그 支配가 一般的으로 그렇게 極端的인 禁戒에 立脚하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極히 적은 挑避의 可能性만을 남기는 것이며 生活의 具體面에까지 더 깊게 侵透하고 게다가 精神自体를 奴隸化하기 때문이다.³⁰⁾

社会性格의 平等은 事實上 社会에 있어서의 平等의 한 形態이며 同時에 特別나게 모든 사람의 自由의 機會를 危脅하는 하나의 平等이기도 하다.

어떠한 境遇에 있어서도 社会過程에 對한 個人의 參與方法과 種類는 從屬과 自發性的의 奇妙한 하나의 混合이다. 언제나 個人은 自己를 힘든 社会現實속에 내맡겨야 하며 따라가고 變化시켜야 하며 自己自身을 그 속에서 實現시켜야 하며 自己의 個性을 社会的 事實과의 鬪争속에서 지켜나가야 하는 機會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同時에 社会 또한 언제나 個人의 自由와 自發性에 對한 하나의 介入者로 있게 마련이다. 個人은 自己를 둘러싼 行動의 規定과 規範 그리고 社会的 役割期待에 늘려있는 것이고 그는 어떤 境遇에도 이러한 것들을 벗어나려면 卽시 犧牲을 치르거나 또는 그렇게 해서도 벗어나지 못할 일은 많을 것이다. 同調主義는 機能하고 있는 모든 社会的 하나의 構造的 條件이다. 왜냐하면 同調主義란 社会契約이 雙方에 依해서 지켜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을 意味할 뿐이기 때문이다. 社会를 爲해서 同時에 自己自身을 爲해서 個人은 生活의 更 넓은 領域에서 이미 定해진 社会的 行動範例를 따라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로써 그 自身속에 있는 個別的 現實과 그의 밖에 있는 社会的 現實사이에서 있는 公調性에 對한 하나의 最少限의 基準을 設定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社会性格의 平等은 同調主義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30) J.S.Mill, op.cit., pp. 5-6.

社會統制의 程度와 社會的 行爲規定의 範圍는 同調主義의 두개의 重要한 可變의 次元이다. 모든 社會가 반드시 離脫行爲를 排除하는 威脅的인 禁御를 가지고 臨하지는 않는다. 이와같은 意味에서 社會는 個人의 自由에 對한 要求를 그보다도 더 強한 또는 더 弱한 社會統制에 依해서 또는 持統的 또는 一時的인 行爲規定을 통해서 發展 또는 危脅할 수 있다.

個人行爲의 徹底한 社會統制와 깊숙히 파고드는 規定에 있어서도 個人에게는 그가 이와같은 條件下에서도 그와 그 個體에 알맞는 하나의 組合을 發見하는 立場에 있을 수 있는, 社會的으로 定型化된 行爲範例의 多樣性이 利用될 수가 있다. “社會統制와 社會的 行爲規定은 그 自体로서는 아직도 平等의 原則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範圍內에서는 平等은 必然的으로 同調的이며 따라서 社會的으로 規定되어 있고 統制된 個人의 行爲가 다 같이 一樣하게 되는 곳에서만, 그리고 社會的으로 別로 選擇의 餘地가 없는 일 또는 單 한 가지의 可能性에 對해서만 要求되고 있는 行爲의 內容이 大端히 限定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든 個體는 同調的 行爲라는 灰色의 流動物속에서 모습이 사라지는 그러한 곳에서만 비로소 成立하는 것이다. 그 때에는 그 自身이 社會性格의 平等으로써 說明되는 自由의 各 形態가 發生하게 된다”³¹⁾

이에 따라서 人間社會에서 政治權力者의 立場에서 計劃된 것이 아닌 自發的인 決定으로서의 一樣主義가 存在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社會性格의 平等은 社會的 役割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同一한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期待하는 것을 意味할 수도 있다.³²⁾

反面에 社會性格의 平等이 徹底한 社會統制手段과 結合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곳에서는 모든 種類의 自發性을 비치기만 해도 그것은 社會的 存続에 대한 危脅이 된다. 왜냐하면 이와같은 社會에서는 假面만이 通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假面은 모든 사람에게 對해서 同樣한 것이다.

自發的인 決定으로서의 一樣主義인 境遇에는 同調的으로 存在하는 일과 同樣的으로 存在하지 않는 일이 可能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여기서 세상 平等의 極端과 不平等의 極端은 現實的으로는 可能하지 않다는 事實이 드러난다. 如何間에 現代의 많은 社會들이 社會性格의 一樣化의 傾向을 가진다는 特徵은 想像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社會性格의 平等이 社會的 律戒가 될 때 그 때에는 自由의 個人은 完全하게 自己疎外를 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社會性格의 平等과 모든 사람의 自由의 可能性사이에는 아무런 相互拘束的인 連結이 없는 것이다. 그들의 社會性格에 對해서 不平等하게 있을 수 있을 程度에서 自由로울 수 있다. 人間은 그들의 社會性格들을 서로 平等化하는 그 程度에서 不自由스럽게 되기도 한다. 平等의 모든 可能할 수 있는 概念 밑에서 社會性格의 概念만큼 人間의 自由의 機會에 對한 最惡하고도 두렵한 危脅이 되는 것은 없다. “人間은 自由스럽고 平等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觀

31) Dahrendorf, op. cit., p.261.

32) D. Jacobson, Everything without Tears, Encounter, No.57, 1958, June. p.29 이하

念은 事實이면서도 誤導的인 것이다. 人間은 서로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며 萬約에 그들이 서로가 同等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그들의 個別的 自律性和 社会的 自由는 喪失될 것이다.”³³⁾

人間은 萬約에 그가 疎遠한 目的이나 強制에 屈從하고 服從함이 없이 自己의 生存 所在範圍 안에서 自己를 實現한다면 그때는 그는 自由스러운 存在樣態속에서 存続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부터 人間存在樣式的 基準化 또는 一樣化를 目的으로 하는 모든 平等은 自由의 機會와 有和될수 없음이 結論으로 나오게 된다. 이와같은 意味에서 우리들은 社会身分의 自由와 平等의 關係나 社会性格의 自由와 平等과의 關係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矛盾關係로서 認識했다. 制度의 多元主義, 階層分化, 그리고 性格의 多樣性等이 自由의 可能性을 爲한 하나의 必然的인 條件이 될 때에는 社会身分과 社会性格의 領域에서는 不平等이 있기 마련이다. 여기서도 身分의 基準化, 性格의 一樣化는 모든 意味에서 不自由를 生成하는 것이나 多樣性和 不平等은 다만 問題的이면서도 아직은 斷言的이라고 할 수 없는 自由의 基礎가 된다는 말은 適用될 수 있는 일이다. 自由로운 自己實現의 現實은 消極的도 아니고 積極的도 아니면서도 하여간 平等의 한 機能이 된다.

여기에 對해서 Heimann은 民主主義에 있어서의 自由와 平等의 相補를 促求하고 있다. “自由와 平等은 民主主義의 兩面이다. 同等한 自由가 民主主義를 爲해서 必要하다.”³⁴⁾

4. 結 論

Dahrendorf가 自由를 積極的인 觀點에서 理解해야 한다고 強調하면서 人間의 自己實現을 恣意的인 強制의 欠如의 裏面으로써 理解할 수 있다고 하고 消極的 概念과 積極的 概念을 對立시키는 것은 誤解에 立脚해 있고 이 誤解는 自由가 單純히 人間의 自己實現의 可能性으로 理解될 때에만 發生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이 理論이 自由世界에서만 可能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事實上 이 理論이 共產主義나 다른 全体主義的 獨裁主義 社会에서는 不可能하다는 것은 明白하다. 거기에서는 Berlin의 消極的 概念과 積極的 概念이 適用되는 것이다.

그리고 自由가 自己實現의 意味에서의 活動으로서 知覺될 때 發生하는 것으로서의 斷言的 概念에서는 어느 누구도 어느 社会도 自由롭지 못한 것이며 다만 그 社会가 必要한 境遇에는 自由의 可能性을 만들어낼 수는 있으며 거기에서는 平等以外에도 어느 追加的인 條件을 가진 国家市民身分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即 斷言的 自由는 同等한 市民의 社会에서는 国家市民的 身分에 依해서 解決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도 解決되어 있지 못한 個人의 課題로 남고 있는 것이다.

33) D. Riesman, *The Lonely Crowd*, New Haven, 1950. p.373.

34) E. Heimann, *Vernunftglaube und Religion in der modernen Gesellschaft*, Tübingen, 1955, p.215.

또한 Dahrendorf 는 現代에 있어서의 하나의 社會 -自由主義的 政治-는 萬人の 自由를 可能케 하는 그러한 國家市民身分의 平等을 深化 維持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限界를 넘어선다면 그 政治는 萬人の 基準化와 一樣化에 對한 決定的인 敵對者 다시 말해서 自由 속에서의 人間의 多樣性과 社會의 分化 即 制度의 多元主義의 決定的 擁護者가 될 것이라고 指摘 하면서도 萬人の 國家市民身分의 基本的 平等이 새삼 政治綱領의 中心點이 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Heimann 이 말하는 “同等한 自由는 무엇보다도 自由”³⁵⁾ 라고 指摘하고 自由主義의 發展을 더욱 促求한 것은 傾軋해야만 할 것이다.

끝으로 Vereker 는 1914年부터 이미 새로운 歷史의 한 時期 即 繼統的인 科學的 產業的 革命의 衝擊이 始作되었으므로 어떠한 單純한 社會變化의 診斷도 낡은 것으로 만듦었기 때문에, 中世末에는 理論的인 難關이 權威를 普遍的 教會에 같이 갖고 있던 帝國의 概念들 內에서 幼稚한 民族國家의 政治世界를 理解하려고 努力하는데 있었던 것이라고 指摘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民族的 主權의 必要에 全적으로 限定된 政治的 概念의 도움을 받아 初期의 國際社會를 理解한다는 어려운 課業에 돌러싸여 있다고 다음과 같은 吟味할 만한 價值가 있는 方案을 提示하고 있다.

“서로 서로를 從屬시키거나 그들의 힘을 減少시키려는 意志는 恒常 蔓延해있다 ……
그와같은 惡에 對処하기 爲해서는 어떠한 한 國家內에서 個人의 市民權이나 政治權의 類推에 따라 거기에 모든 國家가 服從해야 하는 힘과 結合된 公衆의 法에 根拠되는 國際法 體系 以外에는 可能한 處方이 없다. 유럽에서 所謂 勢力均衡의 基礎위에서의 平和란 것은 單純한 妄想이기 때문이다.”³⁶⁾

35) Dahrendorf. op. cit., P.268.

36) Vereker, op.cit., P.222.

— Summary —

A Study on the Concept of Freedom
— Relating to the Conditions of Self-fulfilment —

Jung, Jin O

Isaiah Berlin divides the concept of freedom into two categories: negative and positive.

The negative is a principle of liberalism and the positive is a principle of democracy.

On the other hand, Ralf Dahrendorf also divides it into two categories: the problematic and the assertoric. The problematic means that the freedom is possible in circumstances without any suppression and the assertoric means that the freedom is possible when the opportunity of self-fulfilment is perceived.

Berlin's concepts are able to be adapted to the analysis of totalitarian despotism and Dahrendorf's concepts are able to be adapted to the analysis of the free society.

And Dahrendorf has concluded that all citizens' fundamental equality must become a central point of future political platform and the equal liberty is the most fundamental one which should precede any other value. And Charles Vereker points out that today we are beset with the troublesome task of comprehending a nascent international society with the help of political concepts almost wholly limited to the needs of national sovereignty.